

● 제303회 ●  
서울특별시의회(정례회)  
제5차 보건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립 따스한채움터 운영사무  
민간위탁 동의안  
검 토 보 고 서

2021. 11. 22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  
수 석 전 문 위 원

## [서울특별시시장 제출]

의안번호 2904

### I. 조례안 개요

#### 1. 제안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2904
- 나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시장
- 다. 제출일 : 2021년 10월 15일
- 라. 회부일 : 2021년 10월 20일

### 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#### 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립 따스한채움터」는 서울역 주변 무료급식 단체의 실내 급식 시행 및 노숙인들의 자존감 향상을 위해 2010년 설치한 무료급식장으로 노숙인 무료급식을 위한 장소 제공 및 일부 조리 등을 시행하여 노숙인의 급식을 제공하는 민간위탁 운영 시설로서,
- 위탁기간이 2022년 4월 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, 재위탁을 통해 노숙인들의 무료급식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립 따스한채움터 운영사무

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○ 추진근거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-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2호

○ 추진 필요성

- 무료급식장을 이용하는 민간 급식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양질의 노숙인 급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, 노숙인 무료급식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.
- 현 수탁기관의 따스한채움터 운영상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, 재계약이 아닌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함

다. 위탁 대상 사무 등 위탁 범위

- 민간급식단체의 '실내급식장' 이용에 따른 사무관리 및 급식편의 제공
- '실내급식장' 건물 및 시설물의 관리
- 기타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

라. 위탁시설 개요

- 시설명 : 서울특별시립 따스한채움터(개소일자 : '10. 4. 9.)
- 위치 : 용산구 한강대로 377
- 규모 : 연면적 599.5㎡(지상1층/4층)
  - 급식장 401.5㎡(급식실, 조리실, 세척실, 사무실 등), 급식대기소 198㎡

○ 수탁기관 : (사북)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(대표 : 이 철)

○ 운영인력 : 시설장 포함 4명

마. 민간위탁기간 : '22. 4. 9. ~ '25. 4. 8.(3년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(재위탁)

사. 소요예산 : 301,799천원

아.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

[제8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('21. 10. 6.) : 적격]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##### 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**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**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##### ○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

**제8조(지원대상 사업)** 시장은 노숙인 등의 적정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2.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 서비스

**제9조(노숙인시설의 설치·운영)**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·자립과 사회복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설치·운영 할 수 있다.

-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숙인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- 따스한채움터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(자활지원과-10606, 21. 9. 2.)
- 제8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('21. 10. 6.) : 적격

### Ⅲ. 검토 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#### 1 동의안 제출 개요

- 동 사무 민간위탁동의안은 따스한채움터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(자활지원과-10606, 21. 9. 2.) 및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이하 ‘민간위탁 조례’)<sup>1)</sup>에 따라 민간 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.
  - 서울시는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을 하고자 하고 있음.

#### 2 동의안 대상사무 검토

- 서울특별시 따스한 채움터는 「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」<sup>2)</sup> 제8조 제2호에 따라 노숙인에게 무료급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급식장으로 동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해 시장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.
  - 민간급식단체의 ‘실내급식장’ 이용에 따른 사무관리 및 급식편의 제공
  - ‘실내급식장’ 건물 및 시설물의 관리
  - 기타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

- 
- 1)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시장은 제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 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
③~⑤ <생략>
- 2) 제8조(지원대상 사업) 시장은 노숙인 등의 적정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  
1.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 서비스  
2.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 서비스  
3. ~ 10. <생략>

- 서울시가 그동안 노숙인 급식지원시설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한 성과는 다음과 같음.
- 사업성과의 측면에서 민간기관들을 연계하여 무상급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2021년 9월 현재 급식제공은 아래의 <표>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5개 단체가 매주 중식과 석식을 제공하고 있음.

구분	일	화	수	목	금	토	일
중식	상동교회	따스한채움터 대체급식	경제회복센터	지정기부급식 KT&G (사회복지 공동모금회)	(사)사랑의쌀 나눔운동본부	(사)나눔미	지정기부급식 1주 나눔공동체 2주 보궁회 3주 함께하는모임 4주 신리면세점
석식	지정기부급식 3주 일진산업 / 따스한채움터 대체급식	사랑의교회	원봉교회	(사)나눔미	사랑실천 공동체	새사랑교회	서울꽃동네

- 그동안 서울시가 노숙인 일자리 사업의 수행기관 중 하나로 따스한 채움터를 운영한 것과는 달리 현재 민간위탁동의안의 민간위탁 대상사무에 노숙인 일자리 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.
- 주된 사업인 무료급식 사업 외의 성과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노숙인 일자리 사업으로 노숙인 30명에 대하여 급식장 내 질서유지 및 대기인원 관리, 방역 활동, 음식물 조리 지원 및 급식 진행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노숙인 급식식수관리 등을 위한 전자회원증 발급 업무 등도 수행하였음.

구분	세부내용	목표(A)	실적(B)	달성률 (B/A*100)
무료급식	서울역 무료급식장 운영	250,000명	275,572명	110.2%
일자리사업	노숙인 일자리찾기 사업	23명	30명	130.4%
전자회원증	코로나19 신속대응, 방역관리개선	350명	427명	122%

- 최근 3년간 민간위탁금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인건비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 특징임.

구 분	계	인건비	운영비	급식비
2019년	257,541	173,541	60,000	24,000
2020년	297,528	213,528	60,000	24,000
2021년	301,799	217,799	60,000	24,000

- 따스한채움터는 그동안 4차에 걸쳐 민간위탁을 수행해 왔으며, 최초의 지정위탁을 제외하고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에서 연속하여 수탁하여 운영해 왔음.

구분	수탁기간	수탁자	수탁자 선정방법	비고
1차	'10.04.09.~'13.04.08.	(사)서울노숙인시설협회	지정 위탁	
2차	'13.04.09.~'16.04.08.	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	재위탁	공개모집
3차	'16.04.09.~'19.04.08.	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	재계약	
4차	'19.04.09.~'22.04.08.	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	재위탁	공개모집

### 3 쟁점사항

- 동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함에 있어 수탁기관의 방만한 운영이 반복 되어 지적되어 왔음.
- 최근 3년간 해당 시설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한 결과 2019년 3월 21일 법인 감사에 의한 감사결과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9년 서울시청(현대회계법인)에 의한 감사에서는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납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지적되었고, 같은 해 12월



서울시 자활지원과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 10만원 미만 소액 지출건에 대한 지급품 관련 서류 미작성도 지적된 바 있음. 이후 2020년 12월 서울시의 지도감독에서는 시설관리대장 관리 미흡, 시간외 근무 명령서 미관리 등이 지적된 바 있음.

- 이 외에도 시설장의 채용과 관련하여서도 시설장 채용이 부적절 했던 것으로 나타나 시설장의 근로계약이 무효처분 되었으며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진 직장 내 괴롭힘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서 21년 5월 10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최종 결론 나는 등 수탁기관을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때의 실익이 크지 않았음.
- 서울시는 본 동의안을 제출하며 현 수탁기관의 따스한채움터 운영상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, 재계약이 아닌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하고 있으나 현 수탁자가 9년간 수탁하여 운영한 만큼, 적절한 수탁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#### 4 종합의견

- 노숙인에게 실내에서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동 사업의 목적과 취지는 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나 시설운영에 집행부의 적절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방만한 운영이 반복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바 동 시설의 민간위탁 추진과 관련하여 지도·감독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.
- 현재 집행부가 제출한 수탁사무의 내용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. 그러므로 동 시설에서노숙인일자리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바 수탁사무의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.
  - 이 외에 코로나 19로 인해 추진되지 않는 사업들에 대하여서도 동 수탁사무의 내용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